

상담위원회 규정

제정 2017.10.16.

개정 2019.09.02

1장 총칙

제 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상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라 칭한다.

제 2조(목적) 위원회는 대학 및 스쿨 학생 상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.

2장 조직

제 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, 학생상담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각 스쿨(학과) 학생담당 교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회의 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요청하면, 학생의 심리.진로 상담을 지원하는 행정부서의 직원이 참석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상담센터장이 맡는다.

제 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5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
3장 기능

제 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, 의결한다.

1. 학생상담센터의 사업계획과 평가,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사항
2. 기타 학생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3. 상담 네트워크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
4. 위기사례 관리에 관한 사항

4장 회의

제 7조(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 회의는 한 학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의 소집이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인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.

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8조(사무) 위원회의 제반 사무는 학생상담센터에서 관리한다.

제 9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제1항의 간사는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으로 임명하며,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한다.

제 10조(비밀유지)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규정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이 규정은 2019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.